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832호
- 나. 제 안 자 : 채인목 의원 외 10명
- 다. 제안일자 : 2020년 8월 12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2020년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또한 상품권 사용 저변 확대로 일부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부정사용과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 등 서울사랑상품권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종류, 권면금액 및 할인판매 범위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및 안 제8조 제4항).
- 나. 운영대행사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취소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1항·제4항).
- 다. 가맹점에서 복권 및 다른 상품권 등을 판매하고, 서울사랑상품권 수취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 다목 신설).
- 라. 상품권 유통현황 관리를 위해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점에 판매량·재고량·회수량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제3항).
- 마. 가맹점 및 사용자가 조례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신설).
- 바. 법 제20조에 따라 가맹점 등이 법 위반행위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 신설).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의 제정·시행(2020.7.2.)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품권의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현황

- 2020년부터 도입된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¹⁾은 25개 자치구 별로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상품권 형태로 발행되며, 월 70만원 한도까지 할인 구매가 가능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골목경제 침체 극복 방안으로 대폭적인 할인²⁾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여 세 차례의 추경을 통해 현재 까지 총 5,270억원의 상품권이 발행·판매되었음.
 - 상품권의 기본할인율은 7%(서울시 5%, 자치구 2%)로 설계되었으며, 추가 할인의 경우 초기 특별할인은 서울시가, 이후 발행부터는 자치구 자체예산을 통해 보전하였음.

< 서울사랑상품권 예산 및 발행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제4회 추경예산	제3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	2020년 본예산
2020년 예산 (증감)	38,710 (+6,650)	32,060 (+13,460)	18,600 (+5,000)	13,600
상품권 발행규모	108,500	179,000	39,500	200,000

1)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시행(2019.12.31.)으로 도입

2) 최대 20% (15% 할인, 5% 캐시백)

다.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 정비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1호는 서울사랑상품권의 정의를 현행 ‘유가증권’에서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까지로 확대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1.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u>유가증권</u> 을 말한다.	1. ----- ----- ----- ----- ----- 유가증권, <u>「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u> 말한다.

- 이는 법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의를 따른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 모바일, 지류 상품권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상품권의 유형을 유가증권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제로페이와 연계된 전자지급수단으로 발행되는 서울시의 현실과도 상충되는 바, 바람직한 입법으로 판단됨.
- 같은 조 제4호는 법에서 가맹점을 분리 정의함에 따라 ▶상품권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별가맹점’ 과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환전대행가맹점’ 으로 분류하였음.

(2) 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4조제2항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법과 동일하게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시에 단축 또는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안 제4조제4항은 법에서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권면금액을 1만원, 5만원, 10만원권 3종으로 하고 필요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28개로, 이 중 선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로만 발행하는 곳은 서울(25개 자치구)을 비롯해 33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선불카드나 지류의 형태를 이용하거나 혼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2020.9.기준) >

구분	광역 자치 단체	기초자치단체						
		합계	카드	카드+지류 카드+모바일	모 바 일	모바일+ 지류	지류	카드+지류 +모바일
서울	-	25	-	-	25	-	-	-
부산	카드	16	16	-	-	-	-	-
인천	카드	10	10	-	-	-	-	-
광주	카드	5	5	-	-	-	-	-
대전	카드	5	5	-	-	-	-	-
울산	모바일	5	-	-	5	-	-	-
대구	카드	8	8	-	-	-	-	-
세종	카드	-	-	-	-	-	-	-

구분	광역 자치 단체	기초자치단체						
		합계	카드	카드+지류 카드+모바일	모 바 일	모바일+ 지류	지류	카드+지류 +모바일
경기	-	31	수원, 고양, 용인, 부천, 화성, 남양주,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연천	안산, 안양, 평택, 포천, 의왕, 가평, 과천+김포 (카+모)	-	시흥	-	성남
강원	모바일, 지류	14	강릉, 영월, 동해	태백, 인제	-	춘천	원주, 삼척,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홍천	-
충북	-	11	청주, 음성	옥천	-	제천, 진천	충주,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
충남	-	15	천안, 부여	-	공주	아산, 서산, 계룡, 서천	보령, 논산, 당진, 금산,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전북	-	13	익산	무주, 고창	-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부안	-
전남	-	22	광양	영광	-	담양, 곡성, 강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	-
경북	-	22	경산, 경주, 울진	의성, 칠곡, 상주	-	영주, 고령	포항, 안동, 구미, 영천, 문경, 군위, 청송, 영양, 영덕, 성주, 예천, 봉화	김천, 청도
경남	모바일	17	양산	김해 (카+모)	-	창원, 밀양,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함천	진주, 통영, 의령, 함안, 창녕, 거창	-
제주	-	-	-	-	-	-	-	-
합계	9	219	78	18	31	25	64	3

※자료 : 지역사랑상품권의 의의와 주요쟁점(이슈와논점 1760호-2020.10.05., 국회입법조사처)

- 따라서 소비자의 이용편의성 확대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권의 발행 형태를 모바일로만 고정할 것이 아니라, 카드나 지류로 까지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3) 가맹점 · 운영대행사 · 판매대행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 안 제5조제1항은 가맹점의 등록 시 운영대행사를 통한 신청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제1항은 운영대행사와 판매

대행점에 가맹점 등록을 포함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이나 위탁 가능함.
- 이는 현재 제로페이와 연계되어 상품권이 운영됨에 따라 상품권과 제로페이의 가맹신청이 동일한 바, 운영대행사에서 상품권의 가맹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법 제18조에 따라 상품권 업무의 일부만이 위탁가능해 범위를 수정한 것임.
- 다만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 가맹점 등록 거부 업종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법 제7조제2항	조례안 제5조제2항
<p>제7조(가맹점의 등록)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p> <p>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p> <p>2. 「<u>중소기업기본법</u>」 제2조제1항의 <u>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u> 기업을 영위하는 <u>경우</u></p> <p>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p>	<p>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p> <p>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p> <p>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p> <p>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p> <p>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p>

- 안 제5조제4항은 가맹점이 등록을 취소할 경우 사용자가 알 수 있게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상품권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조치임.
- 이밖에 안 제8조제3항은 법 조문과 동일하게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에게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구체화하고 있어, 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4) 환급비율, 할인, 과태료 부과 등(안 제8조제4항·제9조·제14조)

- 안 제8조제4항은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환급에 대한 사항으로, 권면 금액의 60~80%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구매하면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잔액의 환급비율은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다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³⁾으로, 개정안에서 이를 다시 시장에게로 위임하고 있는 바,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⁴⁾는 잔액환급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4)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가맹점 준수사항)

3. 시상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절하는 행위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⁵⁾은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으로 잔액 환급비율을 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에서는 상품권 판매 시 할인율을 10%의 범위로 한정하고, 재난발생·경기침체·대량실업 등 필요시에는 별도의 할인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반기 실시한 코로나19 특별할인과 같은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밖에 안 제14조는 가맹점과 판매대행점, 환전대행가맹점 등이 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과기준과 징수 절차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어, 시장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명시하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수정의견
제14조(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조(과태료)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5)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상품권 부정사용 방지 및 환수조치 (안 제6조·제13조)

- 안 제6조는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구분하고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신설했으며, 개별가맹점의 금지행위에 상품권을 통해 복권이나 타 상품권 등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현행	개정안
<p>제6조(가맹점 준수사항) <u>가맹점</u>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p> <p>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u>판매 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u></p> <p>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p> <p>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6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u>개별가맹점</u>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p> <p>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u>환전 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u></p> <p>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p> <p>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p> <p>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 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p> <p>② <u>환전대행가맹점</u>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u>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u></p> <p>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p>

- 이는 상품권으로 복권이나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부정유통행위(일명 “깡”)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안 제13조는 가맹점과 사용자가 조례에 명시된 준수사항(안 제6조·제7조)을 위반할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는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장이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제5조제3항제3호).
- 다만 환수조치는 서울시 지원금의 범위에서 가능한 바, 지원한 할인보전금은 상품권 금액의 단 5%에 불과해 상품권의 부당 사용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나래	02-2180-8057

[참고자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 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14조(발행실적 등의 제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발행한 지역 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 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 취소
4.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5.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